

---

# 2019년 3D프린팅 산업 분야 포상 계획(안)

---

2019. 8.

# 목 차

<b>I. 추진목적 및 방향</b> .....	1
1. 추진목적 .....	1
2. 추진방향 .....	1
<b>II. 포상개요 및 추천</b> .....	2
1. 포상규모(안) .....	2
2. 추천대상 .....	2
3. 추천기준 .....	3
4. 분야별 표창 추천제한 .....	4
<b>III.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</b> .....	11
1. 제출서류 .....	11
2. 행정사항 .....	12
[붙임]	
1.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.....	14
2. 공적조서(개인/단체) .....	15
3. 이력서/인사기록요약 .....	19
4.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.....	21

# I 추진목적 및 방향

## 1. 추진목적

- 3D프린팅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·기술개발·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·표창함으로써 노고 격려
  - ※ 民·官·産·學·研 등 3D프린팅산업 정책·기술개발에 기여한 전문가 격려
- '19년 「ICT 기기산업 페스티벌」 행사 시 포상하여 3D프린팅 산업의 중요성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관심도 제고
  - ※ '19년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 : 11.20(수) 코엑스 그랜드볼룸

## 2. 추진방향

- 정부포상 후보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후보자 공모 단계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및 각 부문별 후보자 추천 접수
  - 현장 실무 공로자 발굴을 위해 추천요강 배포·홈페이지 게시 병행
- 정부포상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 제고
  -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,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
- 포상 후보자 심사 시 산업계, 학·연구계, 공공기관 및 협·단체 등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 지표 적용

## II 포상개요 및 추천

### 1. 포상규모 : 총 10점

구 분	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		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표창	계
	개인	단체(기업)	개인	
유공자	3점	2점	5점	10점

\* 과기정통부 공적심의회 결과 등에 따라 훈격 및 규모는 변경 가능

### 2. 추천대상

구 분	모집분야	신청대상 및 자격
개인표창	산업계 <sup>1)</sup>	3D프린팅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술·제품개발, 활용·확산, 서비스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·신시장·신산업 창출 등에 기여한 자
	학·연구계 <sup>2)</sup>	3D프린팅 관련 학·연구계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, 인력양성,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내 3D프린팅 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
	공공기관, 협·단체 <sup>3)</sup>	3D프린팅 관련 공공기관 및 협·단체에 종사하면서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개발·지원, 저변확대, 산업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3D프린팅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
단체표창	기업 <sup>4)</sup>	3D프린팅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술·제품개발, 활용·확산, 서비스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·신시장·신산업 창출 등에 기여한 기업

- 1) 관련 산업계의 임직원으로 표창추천 마감일(이하 '추천일')을 기준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(실 근무기간만 적용)
- 2) 초·중·고, 대학, 연구원 등을 포함하며, 추천일 기준 현재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(실 근무기간만 적용)
- 3) 공공기관, 협회, 조합 및 기타 관련단체 등을 포함하며, 추천일 기준 현재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(실 근무기간만 적용)
- 4) 3D프린팅 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을 지속한 기업

### 3. 추천기준

- 3D프린팅 산업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·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개인 또는 단체(기업)

#### 가. 일반기준

- 국가관·사명감이 투철하고 불의를 배격하며 공사생활이 타의 귀감이 되고, 직장에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, 사회에서는 봉사과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두루 겸비한 자

#### 나. 추천방법

-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

※ 본인을 추천할 수는 없음

#### 다. 자격기준(포상추천일 기준)

- 개인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근무경력 3년 이상 및 추천 당시 소속기관 근속 2년 이상인자, 단체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추천분야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(기업)에 수여

#### 라. 재포상 금지기간(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)

- 장관표창을 받은 국민·단체는 2년(공무원은 3년)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※ 공무원 장기근속표창은 제외

-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
## 4. 분야별 표창 추천제한

### 가.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

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업)

2) 형사처분

가) 사형,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

나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다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라)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마)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바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사)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3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업)

4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기업)과 그 임원

가)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
나) '임원'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#### 5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가)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#### 6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
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\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7)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
\* (국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, 체납액 등 공개

\* (관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

\* (지방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

8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## 나. 재직공무원 표창 추천제한

1)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업)

2) 형사처분

가)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,

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

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,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(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포함)

<주요비위란>

「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)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

<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>

- 1.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- 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(橫領), 배임(背任)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한 경우
  - 가.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기금
  - 나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
  - 다.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
  - 라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
  - 마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  - 바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
  - 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

4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

5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 측정에 대한 불응

6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
3)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

가)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
나) 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, 군인의 경우 감봉·근신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(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,
  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
- 4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 제3항 제1호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
- ※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
- 5)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- 6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- 가)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
- 나) ‘임원’ 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- 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  -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 검색-사업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  - 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 - 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다)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**7)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**

가)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나)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다) 다만, 상기 가), 나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**8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**

가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나)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
\*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**9)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**

\* (국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 사항, 체납액 등 공개

- \* (관세)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
- \* (지방세)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

## 10) 사회적 물의 등 유발

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
## 다. 단체표창 추천제한

- 1)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
  - ※ 다만, 「정부업무평가기본법」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
- 2)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
- 3) 최근 3년 이내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,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으로 고발·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
  - \*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
- 4) 「국세기본법」 제85조의5, 「관세법」 제116조의2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1조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
  - \*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
  - \* 단체는 법인번호로 체납 조회, 법인번호는 인터넷등기소([www.iros.go.kr](http://www.iros.go.kr))에서 조회 가능
- 5) 수사 중이거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,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

###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

#### 1. 제출서류

- 1) 유공자포상신청서(추천서) 1부(개인 : 붙임 1-1, 단체 : 붙임 1-2)
- 2) 공적조서 1부(개인 : 붙임 2-1, 단체 : 붙임 2-2)
  - ※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(조사자 소속 직위 기재),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
- 3) 이력서 1부(개인에 한함, 붙임 3-1)
- 4)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(공무원에 한함, 붙임 3-2)
  - ※ 추천기관 인사담당자(담당관)의 서명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
- 5)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(개인에 한함, 소속기관 양식에 따름)
  - ※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(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)
  - ※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
- 6)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(붙임 4)
- 7) 서약서 1부(붙임 5)
- 8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(단체(기업)에 한함)
- 9)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

#### 공적조서 작성요령

- 공적조서 작성 시 공적요지는 향후 「수여증명서」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함
  -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
  - 특히, 공적내용 작성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공적을 중점 작성
  -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
  - ※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

#### ▣ 공적요지 작성 예시 (건설공사의 경우)

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건설공사 중 시공분야(또는 설계·감리분야 등)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공법설계와 철저한 시공관리로 건설시공에 기여하였음

- 추천훈격란은 ‘장관표창’ 으로만 기재하며, 조사자는 추천부서장, 추천자는 기관장임

## 2. 행정사항

### 가. 제출방법

- 제출기한 : 2019. 9. 27(금) 18:00까지
- 제출방법 : 전자문서 제출 원칙
  - 다만, 전자문서가 불가능할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가능하며, 관련 자료 이메일 송부
    - ※ 원본서류를 스캔한 .pdf 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(.hwp) 모두 송부 (특히, 제출 서류 중 '5) 인사기록카드 사본', '8) 사업자등록증 사본', '9)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' 외 작성 파일은 모두 한글파일 제출)
- 제출처 : 3d@gokea.org
  - ※ 담당연락처 : 김주미 과장 (3d@gokea.org, 02-6388-6086)

### 나. 포상수여

- 시상일 : 2019. 11. 20.(수)
- 수여장소 및 방법 :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

### 다.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

- 포상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,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함
- 추천기관에서는 포상대상자 추천 시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
- 허위기재 및 누락,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책임은 추천한 기관에 있으며, 추천기일 경과로 인해 추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

-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,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
- 재직공무원의 경우,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
  - ※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,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
- 기타 장관표창 관련 세부기준은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”에 의함
- 표창권자가 인정\*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

## 라. 제한사항 조회 방법

장관표창시 추천제한사항 중 산업재해,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하여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

※ 정부포상(훈장, 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 이상)의 경우,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하여야 함

### 1)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

- 산업재해 :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☎ 044-202-7693)
- 불공정행위 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(☎ 044 - 200 - 4127)
- 임금체불주 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 044-202-7537)

### 2)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

#### 1)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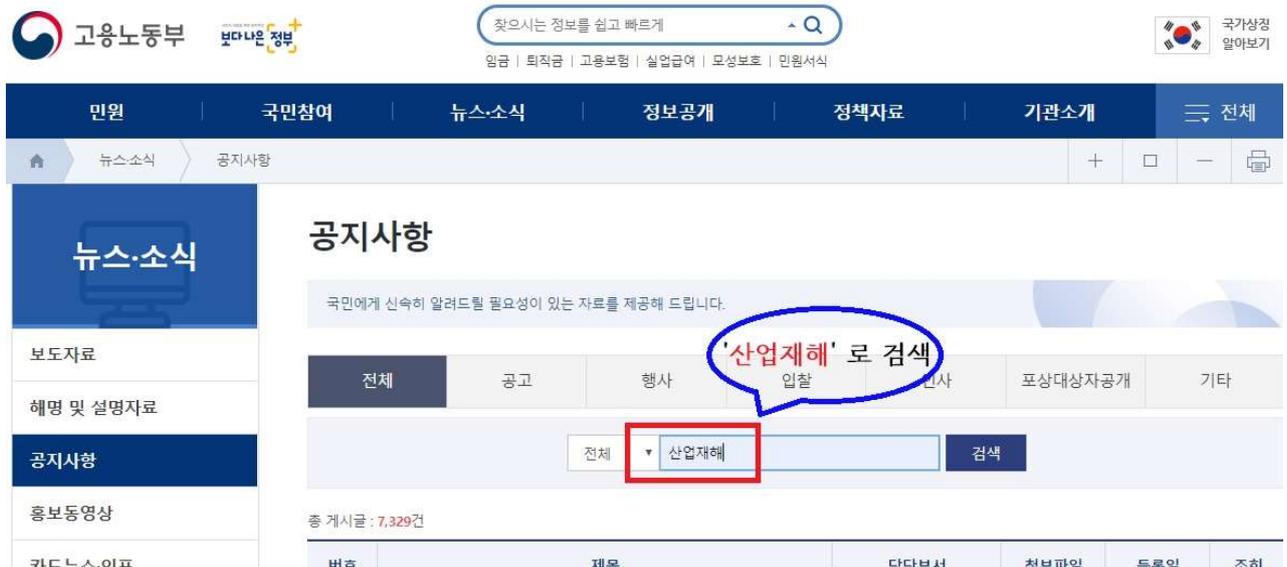
-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8조의4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
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뉴스·소식 > 공지사항 > “산업재해” 검색 : <http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noticeList.do>)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
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뉴스·소식 > 공지사항



- 공지사항에서 “산업재해” 검색



### -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(최근 3년간)

번호	제목	담당부서	첨부파일	등록일	조회
172	[공고]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·연구위원 채용...	산재예방정책과		2019.02.28	67
171	[공고]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서류전...	산재예방정책과		2019.02.22	411
170	[공고]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 포상 접수 안내	산재예방정책과		2019.02.18	511
169	[공고]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·연구위원 공개...	산재예방정책과		2019.02.13	379
① 168	[공고] 2018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	산재예방정책과		2018.12.28	1631
167	[포상대상자공개] 2018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명단	산재예방정책과		2018.06.29	2152
166	[포상대상자공개] 산업재해예방 유공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	산재예방정책과		2018.05.02	2183
165	[공고] 2018년도 산업재해예방유공 포상 접수 안내	산재예방정책과		2018.02.22	1565
② 164	[공고] 2017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	산재예방정책과		2017.12.20	6347

○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- 「사업자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 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-사업장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## 2)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임원

○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(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)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○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 조회 :

<http://www.ftc.go.kr/www/violationLawList.do?key=298>)를 통하여 확인

-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> 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조회



-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(최근 3년간)



3)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○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 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○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동법 「시행령」 제23 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
※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:

<http://www.moel.go.kr/info/defaultler/list.do>)를 통하여 확인

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
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Ministry of Labor (고용노동부). At the top,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tabs including '민원', '국민참여', '뉴스소식', '정보공개', '정책자료', and '기관소개'. The '정보공개' (Information Disclosure) tab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. Below the navigation bar, there is a grid of information disclosure categories. The '체불사업주 명단공개' (Defaulting Business Owner Disclosure) category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'2'. Other categories include '사전정보 공표목록', '행정정보공개', '정책실명제', '청렴정책공개', '공공데이터개방', '법정정보', '국고보조사업', '재정정보공개', and '기금운용(고용/산재)'. The '체불사업주 명단공개' category lists sub-items: '현행법령', '최근제·개정법령', '입법·행정예고', and '훈령·예규·고시'.

## -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

정보공개

- 사전정보 공표목록
- 행정정보공개
- 정책실명제
- 청렴정책공개 +
- 공공데이터개방 +
-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- 법령정보 +
- 국고보조사업 +
- 재정정보공개 +
- 기금운용(고용/산재) +
- 고용노동통계

###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
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.

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,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.

###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
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(매년 8월 31일)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, 관보,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

**근거 :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**

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, 체불사업주의 성명, 나이 사업장명, 주소 및 소재지,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

④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

## -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(최근 3년간)

정보공개

- 사전정보 공표목록
- 행정정보공개
- 정책실명제
- 청렴정책공개 +
- 공공데이터개방 +
-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- 법령정보 +
- 국고보조사업 +
- 재정정보공개 +
- 기금운용(고용/산재) +
- 고용노동통계

###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
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.

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,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.

\* 2016년 1차 명단공개 기간 : 2016.6.13.~2019.6.12.  
 \* 2017년 1차 명단공개 기간 : 2017.1.4.~2020.1.3.  
 \* 2017년 2차 명단공개 기간 : 2017.7.3.~2020.7.2.  
 \* 2018년 1차 명단공개 기간 : 2018.1.15.~2021.1.14.  
 \* 2018년 2차 명단공개 기간 : 2018.6.18.~2021.6.17.

\* 체불액 :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    가나다순     고액순    전체    10개씩

   지역-전체    업종-전체    검색

종

전체

전체

성명

사업장명

성명	나이	사업장명	주소지(사업주)	소재지(사업장)	체불액

# V 부문별 심사기준

## 1. 개인 - 산업계

구분	평가 항목(기준)	배점	평가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
공통 지표	<input type="checkbox"/> 3D프린팅 산업 발전 기여도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</li> <li>- 국민생활(삶의 질)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</li> <li>- 국가제도, 사회관행, 행정관례,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발전 기여도</li> <li>○ 국민생활 향상도</li> <li>○ 창조적 기여도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
부문 별 지표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 평가	7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D프린팅 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</li> <li>- 신규 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, 활용·확산 노력</li> <li>- 3D프린팅 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실적</li> <li>- 공적에 대한 언론 등 인지정도</li> <li>- 3D프린팅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</li> <li>- 양질의 일자리·신시장·신사업 창출 등에 기여한 정도</li> <li>-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(전문성, 노력, 전략, 열악한 환경 조건 등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D프린팅 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실적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 기간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등급</th> <th>공적기간</th> <th>점수</th> <th>등급</th> <th>공적기간</th> <th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20년 이상</td> <td>10</td> <td>4</td> <td>5~10년 미만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15~20년 미만</td> <td>8</td> <td>5</td> <td>3~5년 미만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10~15년 미만</td> <td>6</td> <td>6</td> <td>3년 미만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	공적기간	점수	등급	공적기간	점수	1	20년 이상	10	4	5~10년 미만	4	2	15~20년 미만	8	5	3~5년 미만	2	3	10~15년 미만	6	6	3년 미만
등급	공적기간	점수	등급	공적기간	점수																					
1	20년 이상	10	4	5~10년 미만	4																					
2	15~20년 미만	8	5	3~5년 미만	2																					
3	10~15년 미만	6	6	3년 미만	1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
총점		100																								

## 2. 개인 \_ 학 · 연구계

구분	평가 항목(기준)	배점	평가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
공통 지표	<input type="checkbox"/> 3D프린팅 산업 발전 기여도	20	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발전 기여도</li> <li>○ 국민생활 향상도</li> <li>○ 창조적 기여도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</li> <li>- 국민생활(삶의 질)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</li> <li>- 국가제도, 사회관행, 행정관례,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
부문 별 지표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 평가	70	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3D프린팅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D프린팅 산업발전 신기술 개발 실적</li> <li>- 3D프린팅 산업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</li> <li>- 신규 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 지원 노력</li> <li>- 3D프린팅 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 실적</li> <li>- 3D프린팅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</li> <li>-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</li> <li>-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(전문성, 노력, 전략, 열악한 환경 조건 등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
공적 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 기간	10	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등급</th> <th>공적기간</th> <th>점수</th> <th>등급</th> <th>공적기간</th> <th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20년 이상</td> <td>10</td> <td>4</td> <td>5~10년 미만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15~20년 미만</td> <td>8</td> <td>5</td> <td>3~5년 미만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10~15년 미만</td> <td>6</td> <td>6</td> <td>3년 미만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	공적기간	점수	등급	공적기간	점수	1	20년 이상	10	4	5~10년 미만	4	2	15~20년 미만	8	5	3~5년 미만	2	3	10~15년 미만	6	6	3년 미만
등급	공적기간	점수	등급	공적기간	점수																					
1	20년 이상	10	4	5~10년 미만	4																					
2	15~20년 미만	8	5	3~5년 미만	2																					
3	10~15년 미만	6	6	3년 미만	1																					
총점		100																								

### 3. 개인 \_ 공공기관, 협·단체

구분	평가 항목(기준)	배점	평가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통 지표	<input type="checkbox"/> 3D프린팅 산업발전 기여도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</li> <li>- 국민생활(삶의 질)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</li> <li>- 국가제도, 사회관행, 행정관례,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국가발전 기여도</li> <li>○국민생활 향상도</li> <li>○창조적 기여도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부문 별 지표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 평가	7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D프린팅 산업, 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</li> <li>- 3D프린팅 산업개선, 저변확대, 정책개발·지원 노력</li> <li>- 3D프린팅 저변확대 기여 정도</li> <li>- 3D프린팅 산업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</li> <li>- 3D프린팅 분야의 종사자 집단에 대한 평판도</li> <li>- 공적에 대한 언론 등 인지정도</li> <li>- 3D프린팅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 등</li> <li>-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(전문성, 노력, 전략, 열악한 환경 조건 등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 기간		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등급</th> <th>공적기간</th> <th>점수</th> <th>등급</th> <th>공적기간</th> <th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20년 이상</td> <td>10</td> <td>4</td> <td>5~10년 미만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15~20년 미만</td> <td>8</td> <td>5</td> <td>3~5년 미만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10~15년 미만</td> <td>6</td> <td>6</td> <td>3년 미만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	공적기간	점수	등급	공적기간	점수	1	20년 이상	10	4	5~10년 미만	4	2	15~20년 미만	8	5	3~5년 미만	2	3	10~15년 미만	6	6	3년 미만	1
	등급					공적기간	점수	등급	공적기간	점수																			
1	20년 이상	10	4	5~10년 미만	4																								
2	15~20년 미만	8	5	3~5년 미만	2																								
3	10~15년 미만	6	6	3년 미만	1														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점		100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# 4. 단체 \_ 기업

구분	평가 항목(기준)	배점	평가 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
공통 지표	<input type="checkbox"/> 3D프린팅 산업 발전 기여도	20											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발전 기여도</li> <li>○ 국민생활 향상도</li> <li>○ 창조적 기여도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 된 정도</li> <li>- 국민생활(삶의 질)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</li> <li>- 국가제도, 사회관행, 행정관례, 기업운영 관행 등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
부문 별 지표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 평가	70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기업 일반현황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 연혁 및 조직 구성</li> <li>- 기업 재무건전성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)</li> <li>- 기업 3D프린팅 사용 실적 및 확산에 기여한 실적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3D프린팅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	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3D프린팅 산업 발전 및 선도화에 기여한 정도</li> <li>- 신규 기술개발 및 품질 개선, 활용·확산 노력</li> <li>- 3D프린팅 분야의 종사자 집단 활동실적</li> <li>- 공적에 대한 언론 등 인지정도</li> <li>- 3D프린팅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환정도</li> <li>- 양질의 일자리·신시장·신사업 창출 등에 기여한 정도</li> <li>-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(전문성, 노력, 전략, 열악한 환경 조건 등)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
	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적 기간	10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당해분야에서 종사한 연수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적기간을 수 개의 등급별 구간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일정 점수 부여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등급</th> <th>공적기간</th> <th>점수</th> <th>등급</th> <th>공적기간</th> <th>점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20년 이상</td> <td>10</td> <td>4</td> <td>5~10년 미만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15~20년 미만</td> <td>8</td> <td>5</td> <td>3~5년 미만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10~15년 미만</td> <td>6</td> <td>6</td> <td>3년 미만</td> <td>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	공적기간	점수	등급	공적기간	점수	1	20년 이상	10	4	5~10년 미만	4	2	15~20년 미만	8	5	3~5년 미만	2	3	10~15년 미만	6	6	3년 미만	1
등급	공적기간	점수	등급	공적기간	점수																						
1	20년 이상	10	4	5~10년 미만	4																						
2	15~20년 미만	8	5	3~5년 미만	2																						
3	10~15년 미만	6	6	3년 미만	1																						
총점		100																									